

**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
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**
심 사 보 고 서

2023년 9월 11일
미래·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3년 8월 24일

나. 제안자: 김순옥 의원 외 6명

다. 회부일자: 2023년 8월 28일

라. 상정일자: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미래·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·의결(2023. 9. 11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김순옥 의원)

제안이유

지난 2021년에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만 18세 이후 청년에게 ‘보호종료아동’이라는 명칭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보호·지원이라는 수동적 의미 대신 능동적 의미가 있는 ‘자립준비 청년’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포함한 구성과 내용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

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인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금품 지원이 실제 소득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명을 변경: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·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자립준비 청년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함
- 나. 자립준비청년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을 도모하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기준에 근거하여 ‘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자립준비청년 금품 지원사업’을 명시함 (안 제5조제7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아동복지법」
- 2)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
- 3)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및 동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: 예산편성 필요

다. 해당부서: 아동청소년과

라. 기 타: 입법예고(2023. 8. 28. ~ 9. 1.) 결과 의견 없음

4. 전문위원 겸토의견

(전문위원: 권오숙)

가. 개정취지

- 현행 우리 구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“퇴소 청소년(보호종료아동)”의 명칭을 보다 능동적 의미의 “자립준비청년”으로 변경하고,

저소득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금품 지원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 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

나. 주요 개정내용

- 안 전체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“퇴소(보호조치 종료)청소년”이라는 명칭을 “자립준비청년”으로 정비하였는데, 이는 정부의 「보호종료 아동 지원강화 방안」(2021. 7. 12.)에 따른 것으로
 - 보호종료 당사자들에게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 출신이라는 낙인효과를 준다는 지적
 - 연령상 19세부터는 아동이 아닌 성인(청년¹⁾)이라는 점
 - “보호”라는 수동적 용어보다는 당사자 중심의 능동적 용어인 “자립”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고려한 것임
- 조례의 제명 또한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·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자립준비 청년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하였음
- 안 제5조제7호에서는 기존의 지원사업에 ‘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자립준비청년 금품 지원사업’을 추가하였는데

1)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년”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.

-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립준비청년[39명, 2023.7. 26.기준]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자립수당을 지급[월 10만원, 전액구비, 최대 60개월 지급] 하고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소득 조사 시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²⁾하여, 안정적인 소득 제공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

다. 종합의견
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·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」는 관내 아동·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·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고자 제정된 것으로
- 「아동복지법」에서는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이 18세에 달하거나,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하도록 하고 있고, 보호조치 연장의사가 있는 경우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

2)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[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제2항]

다)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급(권)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
다음의 3가지 특징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. 단, 공공근로사업 노임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에 포함

- (1) 조례에 지원 대상이 수급자나 저소득주민으로 명시
 - 저소득주민은 “차상위계층” 또는 “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민” 등과 같이 선정기준이 조례에 명시되어야 함
- (2) 동 금품의 조성을 위한 예산이 100% 지자체의 부담인 사업
- (3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서 정하는 급여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·해산·장제·자활급여)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할 것
 - 예를 들어, 교육급여의 부가서비스인 중고생 교복비, 생계급여의 부가서비스인 동절기 난방비 등

[출처: 202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]

- 보건복지부의 『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』에 따르면 보호가 종료된 아동들은 상당한 불안감³⁾을 겪고 있고 시설 밖 자립은 어렵기만 한 현실이며
 - 특히 보호종료아동에게 ‘죽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’에 대해 물었을 때 ‘경제적인 문제’가 32.4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, 이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됨
- 이미 타 자치구에서는 보호종료아동(자립준비청년)을 대상으로 구비를 편성하여 유사 사업을 추진⁴⁾하고 있으며, 우리 구 역시 자립수당 추가 지급을 통해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- 이와 더불어 위 조사에는 ‘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필요한 도움’에 대해 질문했을 때
 - ‘도움이 필요 없다’는 대답은 22.2%에 그쳤으며
 - ‘이야기할 수 있는 멘토’(15.8%), ‘상담할 수 있는 선생님 또는 전문가 필요’(10.1%), ‘심리상담 제공 또는 심리상담 비용 지원’(10.0%), ‘심리 정서적 어려움이 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한 정보’(3.5%) 등 사람을 통해 도움을 받고자 하는 욕구는 40% 가까이 나타나

3) 보호종료예정 및 보호종료아동의 자살생각 경험

(단위: %)

구분	생각해 본 적이 없다				생각해 본 적이 있다			
보호종료예정아동	57.2				42.8			
	남	66.7	여	47.8	남	33.3	여	52.2
보호종료아동	50.0				50.0			
	남	56.6	여	44.1	남	43.4	여	55.9

- 4) 타 자치구 지원현황: 광진구(최대 5년, 월200천원), 서초구(최대 5년, 월300천원), 동작구(최대 3년, 월200천원), 서대문구(최대 5년, 월200천원) 등

- 수당 지급과 같은 재정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,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진정한 자립을 유도할 수 있는 마음건강사업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※ 붙임 관계 법령 1부.

□ 「아동복지법」

- 제16조(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)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,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.
- ②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,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, 아동을 상담·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 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. 다만,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·교육·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④ 삭제 <2021. 12. 21.>
- ⑤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아동학대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례 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아동학대 재발의 위험이 현저하여 긴급히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.

제16조의3(보호기간의 연장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 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. 다만,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.

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(대학원은 제외한다)에 재학 중인 경우
2.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·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
3.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·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제39조(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) ① 보장원의 장,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,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

제31조(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)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7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(이하 “청소년복지시설”이라 한다)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청소년쉼터: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·학교·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·주거·학업·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
2. 청소년자립지원관: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·학교·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
3. 청소년치료재활센터: 학습·정서·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·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
4. 청소년회복지원시설: 「소년법」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·주거·학업·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
□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

제6조의3(소득인정액의 산정)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·질병·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,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,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.

1. 근로소득
2. 사업소득

3. 재산소득

4. 이전소득

② 제2조제9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(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한다)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. 이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일반재산(금융재산 및 자동차를 제외한 재산을 말한다)

2. 금융재산

3. 자동차

③ 실제소득,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·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3조(보장비용의 부담 구분) 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

□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」

제5조(소득의 범위)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.

1. 퇴직금, 현상금, 보상금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같은 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
2. 보육·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, 학자금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
3.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

③ 보장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소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다. 이 경우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확인 및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1.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
2. 「최저임금법」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

□ 「2023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」 P.102~103

2)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[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제2항]

다)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급(권)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

다음의 3가지 특징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.

단, 공공근로사업 노임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에 포함

(1) 조례에 지원 대상이 수급자나 저소득주민으로 명시

- 저소득주민은 “차상위계층 또는 “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민” 등과 같이 선정기준이 조례에 명시되어야 함.

(2) 동 금품의 조성을 위한 예산이 100% 지자체의 부담인 사업

(3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서 정하는 급여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·해산·장제·자활급여)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할 것

- 예를 들어, 교육급여의 부가서비스인 중고생 교복비, 생계급여의 부가 서비스인 동절기 난방 등